

제22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2021. 4. 1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67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1. 4. 5.
- 라. 회부일자 : 2021. 4. 5.

2. 제안이유

구민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인력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감염병 대응) 급성 감염병 상시 관리체계 구축 전담인력 2명

(스마트 뉴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및 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인력 1명

(교육·문화) ‘금천뮤지컬스쿨’ 건립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 인력 2명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 1) 정원의 총수를 1,167명 → 1,172명으로 개정(증 5명)
- 2) 집행기관의 정원을 1,141명 → 1,146명으로 개정(증 5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안 제4조 관련 별표 3)

- 1) 총계 : 1,167명 → 1,172명(증 5명)
- 2) 일반직 계 : 1,163명 → 1,168명(증 5명)
- 3) 6급 이하 계 : 1,100명 → 1,105명(증 5명)

4.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본 개정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주요내용

감염병 대응인력 2명, 스마트 뉴딜사업 추진인력 1명, 금천뮤지컬스쿨 운영·관리인력 2명 등 총 5명을 증원하여

- 1) 총 정원은 1,167명 → 1,172명으로,
- 2) 일반직은 1,163명 → 1,168명으로,
- 3) 6급 이하는 1,100명 → 1,105명으로 조정하는 것임.

다. 검토결과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코로나 19 대응 등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정원 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아울러 정원 조정으로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다양한 구민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구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 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하면, 6급 3명, 7급 7명이 증원되고, 8급 4명, 9급 1명이 감소되어 총 5명이 증원되는 바(8쪽의 붙임 3. 참고), 국가정책 및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나, 8·9급이 감소하고 6·7급이 증원됨에 따라 증가하는 인건비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① 인력충원에 따른 비용추계 : 9쪽의 붙임 4. 비용추계서 참고

② 기준인건비 :: 10쪽의 붙임 5. 기준인건비 현황 참고

- 붙임 1. 관계 법령 1부.
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표]
직급·직렬별 정원표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4. 비용추계서 1부.
5. 기준인건비 현황 1부.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분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 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1,167명</u>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u>1,141명</u></p> <p>2. (생략)</p>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총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청</th> <th style="text-align: center;">구의회사무국</th> <th style="text-align: center;">보건소</th> <th style="text-align: center;">동</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u>1,167</u></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u>1,167</u></td> </tr> <tr> <td>정무직</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일반직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u>1,163</u></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u>1,163</u></td> </tr> <tr> <td>3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r> <tr> <td>5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52</td> <td style="text-align: center;">32</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6급 이하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u>1,100</u></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u>1,100</u></td> </tr> <tr> <td>전문경력관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r> <td>별정직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r> <td>5급 상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6급 상당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u>1,167</u>	<u>1,167</u>				정무직	1	1				일반직계	<u>1,163</u>	<u>1,163</u>				3급	1	1				4급	8	6	1	1		5급	52	32	2	8	10	6급 이하계	<u>1,100</u>	<u>1,100</u>				전문경력관계	2	2				별정직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2	2				<p>제2조(정원의 총수) ----- ----- -----<u>1,172명</u>----- -----.</p> <p>1. ----- <u>1,146명</u></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총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청</th> <th style="text-align: center;">구의회사무국</th> <th style="text-align: center;">보건소</th> <th style="text-align: center;">동</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u>1,172</u></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u>1,172</u></td> </tr> <tr> <td>정무직</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일반직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u>1,168</u></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u>1,168</u></td> </tr> <tr> <td>3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r> <tr> <td>5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52</td> <td style="text-align: center;">32</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6급 이하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u>1,105</u></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u>1,105</u></td> </tr> <tr> <td>전문경력관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r> <td>별정직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r> <td>5급 상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6급 상당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u>1,172</u>	<u>1,172</u>				정무직	1	1				일반직계	<u>1,168</u>	<u>1,168</u>				3급	1	1				4급	8	6	1	1		5급	52	32	2	8	10	6급 이하계	<u>1,105</u>	<u>1,105</u>				전문경력관계	2	2				별정직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2	2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u>1,167</u>	<u>1,167</u>																																																																																																																																																		
정무직	1	1																																																																																																																																																		
일반직계	<u>1,163</u>	<u>1,163</u>																																																																																																																																																		
3급	1	1																																																																																																																																																		
4급	8	6	1	1																																																																																																																																																
5급	52	32	2	8	10																																																																																																																																															
6급 이하계	<u>1,100</u>	<u>1,100</u>																																																																																																																																																		
전문경력관계	2	2																																																																																																																																																		
별정직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2	2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u>1,172</u>	<u>1,172</u>																																																																																																																																																		
정무직	1	1																																																																																																																																																		
일반직계	<u>1,168</u>	<u>1,168</u>																																																																																																																																																		
3급	1	1																																																																																																																																																		
4급	8	6	1	1																																																																																																																																																
5급	52	32	2	8	10																																																																																																																																															
6급 이하계	<u>1,105</u>	<u>1,105</u>																																																																																																																																																		
전문경력관계	2	2																																																																																																																																																		
별정직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2	2																																																																																																																																																		

붙임 3

직급·직렬별 정원표 신규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구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동	직급별 \ 기관별	총계	구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동
총 계	1,167	801	26	90	250	총 계	1,172	804	26	92	250
일반직(계)	1,163	799	24	90	250	일반직(계)	1,168	802	24	92	250
6급 소계	219	161	4	17	37	6급 소계	222	164	4	17	37
시 설	21	21				시 설	23	23			
행정,보건, 공업 또는 환경	1	1				행정,보건, 공업 또는 환경	2	2			
7급 소계	341	272	6	30	33	7급 소계	348	275	6	31	36
행 정	177	145	4	6	22	행 정	179	147	4	6	22
사회복지	24	14			10	사회복지	28	15			13
녹 지	4	4				녹 지	5	5			
환 경	3	3				환 경	2	2			
간 호	14			14		간 호	15			15	
8급 소계	339	214	7	27	91	8급 소계	335	213	7	27	88
사회복지	84	33			51	사회복지	80	32			48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3	3			
운 전	5	4			1	운 전	4	3			1
9급 소계	201	111	4	7	79	9급 소계	200	109	4	8	79
행 정	68	33	2	1	32	행 정	70	35	2	1	32
세 무	8	8				세 무	10	10			
녹 지	2	2				녹 지	3	3			
보 건	3	1		2		보 건	4	1		3	
시 설	16	16				시 설	17	17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3	3			
위 생	3	2		1		위 생	2	1		1	
운 전	21	11	2		8	운 전	15	5	2		8
사무운영	10	9			1	사무운영	8	7			1

붙임 4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체

- 직급별 비율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2] 직급별 정원책 정기준에 따름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책정기준	1%이내	6%이내	21%이내	31%이내	30%이내	10%이상	1%이내
개정후 비율	0.77%	4.44%	18.86%	29.69%	28.58%	17.15%	0.17%

- 인건비 기준액

구분	호봉 기준	21년 기준액	증원
9급	1호봉	3,690천원/월	2명
7급	1호봉	4,117천원/월	3명

※ ① 기본급+②고정수당(정액급식비,대민활동비,명절휴가비,정근수당,직급보조비)+③ 추가수당(가족수당,시간외수당,학비보조,출장비,연차수당,특수근무수당)+④ 복지포인트

- 임금인상율 : 연2.3% 적용(최근 5년 평균)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인건비	236,772	242,218	247,789	253,488	259,318	1,239,585
세출	소계	236,772	242,218	247,789	253,488	259,318	1,239,58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구비	자체재원	236,772	242,218	247,789	253,488	259,318	1,239,585
	의존재원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236,772	242,218	247,789	253,488	259,318	1,239,585

5. 작성자 : 행정지원과 인사팀 임수애 (2627-1012)

붙임 5

기준인건비 현황

□ 2021년도 행안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단위 : 백만원)

합 계	일반직	기타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비고
109,529	85,912	1,032	22,585	전년 대비 0.7% 상승

□ 연도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행안부 기준액	예산현액 (행안부 기준액 대비)		지출액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2년	78,681	77,072	98.0%	70,012	90.8%	7,060	9.2%
2013년	82,345	78,511	95.3%	71,781	91.4%	6,730	8.6%
2014년	85,476	83,947	98.2%	75,817	90.3%	8,130	9.7%
2015년	89,904	85,889	95.5%	80,113	93.3%	5,776	6.7%
2016년	91,488	87,670	95.8%	83,808	95.6%	3,862	4.4%
2017년	97,198	91,886	94.5%	88,486	96.3%	3,400	3.7%
2018년	99,124	96,337	97.1%	91,713	95.2%	4,664	4.8%
2019년	104,405	103,485	99.1%	95,488	92.3%	7,997	7.7%
2020년	108,789	106,951	98.3%	99,694	93.2%	7,257	6.8%
2021년 (3.24.기준)	109,529	106,956	97.7%	25,438	23.8%	81,518	76.2%